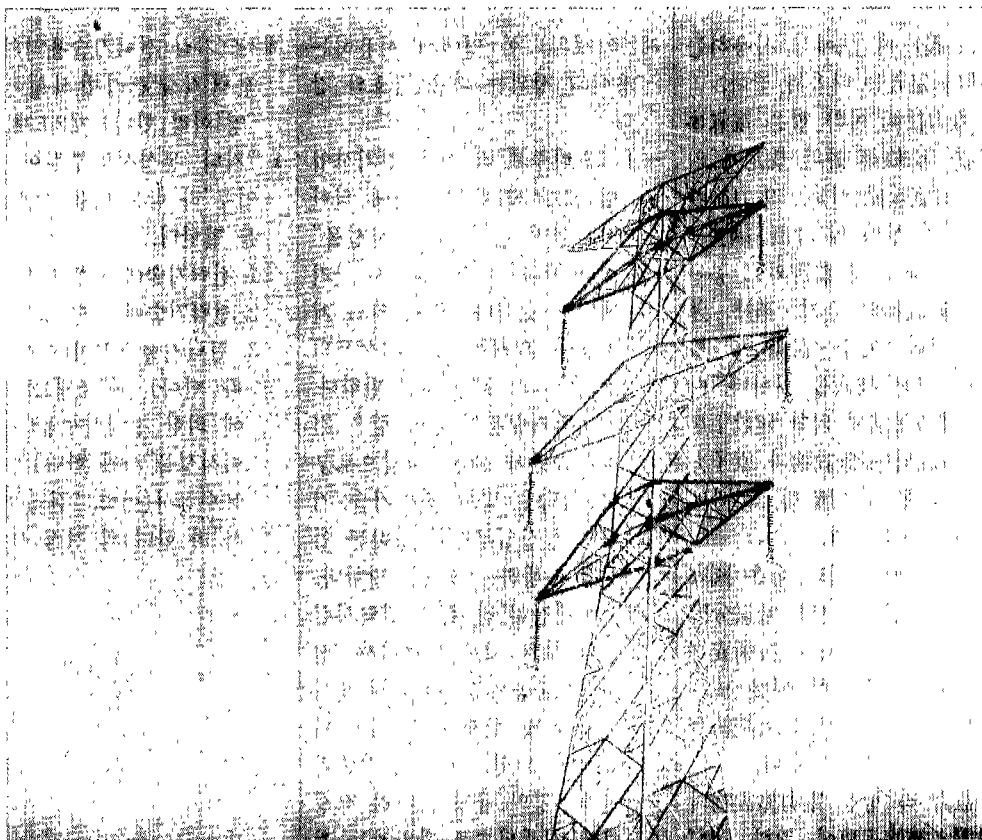


#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制定 1995. 12. 30 法律 第5,132號	制定 1996. 10. 28 대통령령 제15,160호	制定 1996. 11. 27 통상산업부령 제49호
第1章 總 則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p>第1條(目的) 이 법은 電力技術의 研究 開發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함으로써 電力技術水準을 향상시키고 電力施設物設置의 적정을 기하여 公共의 安全을 확보하고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電力技術"이라 함은 電氣事業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設備(이하 "電力施設物"이라 한다)의 計劃·調查·設計·施工 및 監理와 완공된 電力施設物의 유지·補修·運用·관리·安全·診斷 및 檢査에 관한 技術을 말한다. 다만, 建設業法에 의한 建設工事로 造成되는 施設物과 原子力法에 의한 原子爐 및 그 관계 施設은 제외한다.</p> <p>2. "電力技術人"이라 함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系와 技能系의 技術資格取得者 및 일정한 學歷 또는 經歷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p> <p>3. "設計"라 함은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に 관한 計劃書·設計圖面·示方書·工事費內譯書·技術計算書 및 이와 관련된 書類(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行위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관리주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거나 소유자와의 계약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p> <p>2. "전력기술용역"이라 함은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력기술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설계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계획·조사 및 설계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4. "발전설비"라 함은 터빈·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p>	<p>제2조(기타 전력기술용역의 범위)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p> <p>1. 전력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p> <p>2. 전력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p> <p>3.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보수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견적 산출</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4. “工事監理”라 함은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に 대하여 發注者의 委託을 받은 監理業體가 設計圖書 기타 關係書類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등에 대한 技術指導를 하며, 關係法令에 따라 發注者의 權限을 大行하는 것을 말한다.</p> <p>5. “監理員”이라 함은 監理業體에 종사하면서 電力施設物의 工事監理業務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p>	<p>전선로, 제어장치 및 전기기계·기구중 주차단기의 2차측단자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기력·원자력·내연력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를 제외한다.</p> <p>5. “전력사용설비”라 함은 전력 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원방감시제어설비·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빛·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꽃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p> <p>제3조(전력기술인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p>	
<p>第2章 電力技術의 振興</p> <p>第3條(電力技術振興基本計劃의 수립)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電力技術의 研究·開發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電力技術振興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電力技術振興의 基本目標 및 그 추진방향</li> <li>2. 電力技術의 開發促進 및 그 活用을 위한 施策</li> <li>3. 電力技術人의 養成 및 需給에 관한 사항</li> <li>4. 새로운 電力技術의  채택에</li> </ol>	<p>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p> <p>제4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통상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력기술</p>	<p>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관한 사항</p> <p>5. 電力技術의 情報管理 및 標準化에 관한 사항</p> <p>6. 電力技術을 研究하는 機關 및 團體의 指導·육성에 관한 사항</p> <p>7. 電力技術의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p> <p>8. 電力技術의 振興을 위한 資金支援에 관한 사항</p> <p>9. 기타 電力技術의 振興에 관한 사항</p> <p>③ 通商産業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電力技術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基本計劃의 重要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第4條(研究機關등의 육성등)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電力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電力技術을 研究·開發하는 機關 및 團體를 指導·육성하여야 한다.</p> <p>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의 범위와 그 指導·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이하 “한국전력기술인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지도·육성의 대상 및 방법)</p> <p>① 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부설연구소</li> <li>2. 한국전력기술인협회</li> <li>3.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li> <li>4.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li> <li>5.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력기술인의 교육훈련의 지원</li> <li>2. 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li> <li>3. 다른 연구기관·단체 또는</li> </ol>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第5條(研究課題의 선정등)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電力技術의 研究·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力技術에 관한 研究課題를 선정하고 研究할 者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研究課題의 선정 및 研究할 者의 지정과 研究費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지원방법·절차 및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 장관이 정한다.</p> <p>제6조(연구과제의 선정등) ① 통상산업부 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li> <li>2. 전력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li> <li>3.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li> <li>4.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② 통상산업부 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연구과제의 제안자</li> <li>2. 당해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li> </ol> <p>③ 통상산업부 장관은 연구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 통상산업부 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li> <li>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li> </ol>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第6條(電力技術의 研究·開發등의 권고) 通商産業部長官은 새로운 電力技術의 研究·開發 및 導入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者에게 大統領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附設研究 所를 設置·운영하거나 共同研究 및 情報交換·技術開發을 위한 投資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通商産業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 政府投資機關</li> <li>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力技術人協會</li> <li>3. 電力技術關聯團體</li> <li>4. 電力關聯學術團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li> <li>4.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li> <li>5.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li> <li>6. 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li> <li>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li> <li>8. 협약의 변경 및 해약</li> <li>9.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li> <li>10. 기타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li> </ol> <p>제7조(신기술의 보호)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이 개발된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의 보호·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신청) 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서류</li> <li>2. 국내·외 전력시설물에 대한 활용전망에 관한 서류</li> <li>3. 기타 시험결과등 신기술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li> </ol> <p>②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p> <p>제4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심의회원</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된 신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신기술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기술의 명칭</li> <li>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li> <li>3. 신기술의 개발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li> <li>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에 대한 보호내용 및 기간</li> <li>5. 기타 신기술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⑤ 신기술개발자는 당해 연도의 신기술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신기술의 보호 및 지원) ①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에게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된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한 결과 현장적용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전력시설물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의 기간등은 당해 신기술의 고시일로부터 5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신기술지정의 취소)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로 지정받은 경우</li> <li>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전력시설물공사에 적용하여 불가능한 경우</li> <li>3.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시공을 권고할 때에, 이를 고시하고, 당해 신기술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i> </ol>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第7條(電力技術人力의 관리등)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電力技術人力의 효율적 활용과 技術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의 관리와 敎育訓練 등에 관한 施策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p> <p>② 大統領은 敎育訓練을 받는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力技術人協會에서 실시하는 敎育訓練을 받아야 한다.</p> <p>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訓練을 받아야 할 者를  고용한 者 또는 使用者는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의 敎育訓練을 받는데  필요한 經費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의 관리와 敎育訓練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에게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li> <li>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li> <li>3.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및 용량 1천킬로와트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소유자 또는 점유자</li> <li>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li> </ol> <p>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분야 기술자격의 취득·변경사항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9조(전력기술인경력수첩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력기술인경력확인신청서에 그 등급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또는 경력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p>	<p>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제출)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현황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제8조(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등)</p> <p>① 전력기술인이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전력기술인의 사용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원과 자격 및 학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전력기술인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수첩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를, 전력기술인의 보유현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발급신청서를 각각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전력기술경력확인서·경력수첩 및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내지</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경력확인 및 경력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등) ① 전력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공사 또는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1조(교육훈련)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력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전기공사사업법·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와 외국인을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업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li> <li>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관리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li> <li>3.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li> <li>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li> </ol>	<p>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p> <p>④ 협회는 경력수첩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9조(경력산정기준)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등)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정지시를 할 것</li> <li>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사용자에게 당해 전력기술인의 변경을 요구할 것. 이 경우 전력기술인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li> </ol> <p>제11조(교육훈련의 내용등) ①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사·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및 특급기술자는 14시간이상</li> <li>2. 기사1급·기사2급·다기능기술사·기능사1급·기능사·기능사2급 자격을 가진 자, 고급기술자 및 중급기술자는 21시간이상</li> <li>3. 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 및 초급기술자는 28시간이상</li> <li>4. 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 및 중급감리원은 21시간이상, 초급감리원은 35시간이상</li> </ol> <p>②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p> <p>5. 전력시설물의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p> <p>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감리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 소속된 감리원으로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전기공사사업법·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와 외국인을 제외한다</p> <p>③ 전력기술인은 5년마다. 감리원은 3년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1회이상 받아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과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의 범위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종류와 등급별로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p> <p>第8條(電力技術審議委員會) ① 電</p>	<p>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p> <p>5. 전력시설물의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p> <p>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감리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 소속된 감리원으로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전기공사사업법·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와 외국인을 제외한다</p> <p>③ 전력기술인은 5년마다. 감리원은 3년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1회이상 받아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과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의 범위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종류와 등급별로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전력기술심의위원회의 구</p>	<p>한 전력기술인의 교육훈련에는 전력기술·행정·전력기술과 관련된 법규 등 직무교육과 기술인의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감리원의 교육훈련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에 관련된 전력기술·행정 등 직무교육과 기술인의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의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사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교육</li> <li>2. 전기공사사업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술자교육</li> <li>3. 기타 전기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li> </ol> <p>제12조(교육훈련절차) ① 협회는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종류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협회는 매년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협회는 교육훈련을 받은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경력수첩에 교육훈련의 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力技術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通商産業部에 電力技術審議委員會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li> <li>2.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電力技術基準에 관한 사항</li> <li>3. 기타 電力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力技術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성)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통상산업부 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력기술업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7인 이내</li> <li>2. 전기사업자의 임·직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li> <li>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력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2인 이내</li> <li>4. 전력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li> </ol> <p>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13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p> <p>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전문분야별로 지명한다.</p> <p>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②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상산업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p> <p>제15조(의견청취 및 기술검토등) ①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第3章 電力施設物の 設計・監理</p> <p>第9條(電力技術基準) ① 電力施設物の 設計・監理・檢査・點檢 및 관리에 필요한 電力技術基準(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p> <p>② 通商産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基準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電力技術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技術基準의 重要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第10條(技術基準의 遵守) ①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士는 電力施設物이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設計하여야 한다.</p> <p>② 監理員은 設計圖書・關聯規程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電力施設物에 대한 工事監理를 하여야 한다.</p> <p>第11條(電力施設物の 設計圖書의 작성등) ① 電力施設物の 設計圖書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士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標準設計圖書와 新工法・特殊工法을 적용한 設計圖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電氣事業法 第2條第7號의 一般用電氣設備의 電力施設物の 設計圖書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技術資格</p>	<p>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p> <p>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범위등)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분야의 기술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설계도서는 각각 해당 전문기술분야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로 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는 설계도서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로 한다.</p>	<p>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p> <p>제13조(전력기술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으로 한다.</p> <p>제14조(표준설계도서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li> <li>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반복시행하는 전력</li> </ol>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系の 技術資格取得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計士免許를 받은 者가 작성할 수 있다.</p> <p>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를 작성한 電氣分野技術士·設計士 및 設計業者(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의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設計圖書에 署名捺印 하여야 한다.</p> <p>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計監理를 받아야 한다.</p> <p>⑤ 電力施設物의 設計用役은 設計業者에게 發注하여야 한다.</p> <p>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分野技術士 및 設計士의 業務範圍, 設計圖書의 보관, 設計士의 免許發給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17조(설계사의 면허)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는 1급설계사 및 2급설계사로 구분하되, 각각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급설계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2. 2급설계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li> </ol>	<p>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를 위하여 소속 전력기술인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p> <p>3. 기타 반복시행되는 동일한 종류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p> <p>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라 함은 수명연장 및 용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p> <p>③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또는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5조(설계사의 면허발급절차)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설계사면허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p> <p>③ 협회는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①</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량 80만킬로와트이상의 발전설비</li> <li>2. 전압 30만볼트이상의 송전·변전설비</li> <li>3. 전압 10만볼트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li> <li>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차선설비·전력사용설비</li> <li>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li> <li>6. 층수가 21층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및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li> <li>7.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li> </ol> <p>②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설계감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p> <p>③ 설계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 또는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이 그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li> </ol>	<p>제17조(설계감리자의 기준)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라 함은 특급기술자 3인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p> <p>②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업등록증 또는 감리업등록증 사본</li> <li>2. 특급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li> </ol> <p>③ 시·도지사는 설계감리자를</p>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제12條(工事監理等) ① 電力施設物の設置・補修工事發注者(이하 “發注者”라 한다)는 電力施設物の設置・補修工事의品質確保 및 향상을 위하여 第14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監理業의登錄을 한 者(이하 “監理業者”라 한다)에게 監理를發注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電力施設物の設置・補修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電力施設物에 대한 工事監理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理員의 資格確認을 받은 者가 하여야 한다.</p> <p>③ 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p>	<p>2. 정부투자기관</p> <p>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p> <p>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p> <p>5.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p> <p>6.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p> <p>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의 경우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한다.</p> <p>1. 전력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실시·준공 설계도서를 시설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p> <p>2. 설계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 설계도서를 당해 전력시설물이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p> <p>3. 감리업자는 그가 감리한 준공 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p> <p>제20조(공사감리 대상등)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p> <p>1.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p> <p>2.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p> <p>3. 보안을 요하는 군 특수 전</p>	<p>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설계감리자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에 설계감리자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8조(감리원의 경력확인등)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은 감리원의 경력신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본다.</p> <p>② 감리원의 경력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발급신청서를, 감리원경력수첩(이하 “감리원수첩”이라 한다)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원수첩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를, 감리원의 보유현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감리원보유확인서발급신청서를 각각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감리원경력확인서·감리원수첩 및 감리원보유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p> <p>④ 협회는 감리원수첩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원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9조(발주자의 감리원 경력확인등) ① 감리업자는 소속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23호서식의 감</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한 監理對象인 設置·補修工事의 범위 및 監理員의 資格·資格證發給·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를 행하는 監理員은 그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고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의 品質向上에 노력하여야 하며 監理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p>	<p>력시설물공사</p> <p>4. 소방법에 의한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 공사</p> <p>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공사</p> <p>6. 제1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 받은 자로 하여금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인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p> <p>7. 전력시설물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p> <p>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하나의 공사현장으로서 공사감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할 수 있다.</p> <p>제21조(감리원의 자격등)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등급 및 등급별자격기준을 별표 2와 같이 한다.</p> <p>② 제9조의 규정은 감리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수첩"은 이를 "감리원수첩"으로 본다.</p> <p>③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등)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p>	<p>리원경력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감리원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발주자등 관계자의 감리원수첩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등) ① 발주자가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당해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제21조(감리원의 조정등) ①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시 행 령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시 행 규 칙
	<p>부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p> <p>③ 감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발주받은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인원배치기준에 따라 공사착공전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중에서 당해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p> <p>④ 감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현황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업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사계획의 검토</li> <li>2. 공정표의 검토</li> <li>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li> <li>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li> <li>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li> <li>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li> <li>7. 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li> <li>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li> </ol>	<p>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현황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p> <p>제22조(감리원의 업무등) ① 영 제23조제14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장조사분석</li> <li>2. 기성 확인</li> <li>3. 행정지원업무</li> <li>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li> <li>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li> </ol> <p>② 책임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시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별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li> <li>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li> <li>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li> </ol>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제13條(監理員의 工事中止命令등)            ① 監理員은 工事業者가 設計圖            書 기타 關係書類의 내용과 적            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電力施設            物의 設置·補修工事を 施工하            는 경우에는 再施工 또는 工事中            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p>	<p>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            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            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            와 시공가능성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상            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p> <p>제24조(감리원의 관리) ① 통상산            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업            자 또는 감리원에게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현장이동 사항            2. 기술자격 및 학력 변경 사            항            3. 상벌 사항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감리원 또            는 감리업자로부터 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            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            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25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            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            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p>	<p>4. 하도급공사 추진현황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            리계획            7.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8. 해당 기간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9.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10.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감리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업무수            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제23조(감리원의 관리)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            은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감            리원현황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p> <p>제24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지시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            다.            1. 시정지시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리원            의 사용자에게 당해 감리원</p>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員으로부터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지시를 받은 工事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監理員이 工事業者에게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工事의 發注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發注者는 監理員으로부터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제26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p> <p>① 발주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행한 공사중지명령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의 변경요구할 것. 이 경우 감리원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p>
<p>第14條(設計業·監理業의 登錄등)</p> <p>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營業의 種類別로 通商産業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電力施設物의 設計業(이하 “設計業”이라 한다)</li> <li>2. 電力施設物의 工事監理業(이하 “監理業”이라 한다)</li> </ol>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종류와 種類別 登錄基準·營業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③ 設計業 및 監理業의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p> <p>④ 設計·監理의 用役代價는 通商産業部長官이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p> <p>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 또는 監理業을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系의 技術資格 取得者를 代表者로 하여 登錄</p>	<p>제27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기준등)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4와 같고,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5와 같다.</p> <p>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기준을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p> <p>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p>	<p>제25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p> <p>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설계업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감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 사본)</li> <li>2.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li> <li>3.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의 평면축적도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li> <li>4.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ol>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하여야 한다. 다만,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 第4條의 規定에 의 하여 엔지니어링 活動主體로 申 告한 者는 該하지 아니하다.</p>	<p>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상산업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 여는 該하지 아니하다.</p>	<p>5. 영 제27조제1항의 規定에 의 한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 우에 한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規定 에 의한 등록신청을 수리한 경 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 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 의 감리업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 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規定 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 와 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등 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해 설 계업자·감리업자 및 협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p> <p>제26조(등록증의 게시등) ① 설계 업자 및 감리업자는 주된 사무 실내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 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② 업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 및 동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li> <li>2. 대표자·임직원 및 기술인 력의 이력카드</li> <li>3. 기술인력현황 및 자격을 증 명하는 서류</li> <li>4. 자본금에 대한 증명자료</li> <li>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 류</li> <li>6. 보유장비명세서 및 증명서 류</li> <li>7. 연간 사업계획서</li> <li>8. 계약 체결현황 및 기술인력 배치현황 기타 관계서류</li> </ol> <p>제27조(등록변경신고등) ① 설계</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업자 또는 감리업자 영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설계업·감리업의 등록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27조제4항 단서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본금의 증가</li> <li>2. 사무실면적의 증가</li> </ol> <p>제28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p> <p>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p> <p>②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li> <li>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은 때. 다만, 등록증을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분실한 등록증을 다시 찾을 때에 한한다.</li> <li>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li> </ol>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第15條(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監理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禁治産者·限定治産者</li> <li>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li> <li>3. 이 法에 違反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li> <li>4. 이 法에 違反하여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 기간중에 있는 者</li> <li>5.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監理業의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li> <li>6. 任員중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li> </ol> <p>第16條(登錄의 取消·營業停止) 通商産業部長官은 設計業者 및 監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li> <li>2.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한 때</li> <li>3. 設計 또는 監理業務遂行중 他人에게 人命 또는 財産상의 被害를 끼친 때</li> </ol>		<p>폐업신고를 한 때</p> <p>제29조(설계업·감리업의 처분기준)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p> <p>제30조(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 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시·도지</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4. 第15條第1號 내지 第4號의1 또는 同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때(法人의 경우 6月이내에 代表者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5.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p> <p>6. 他人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때</p> <p>第17條(休業등의 申告) 設計業 또는 監理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한 때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通商産業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b>第4章 韓國電力技術人協會</b></p> <p>第18條(韓國電力技術人協會의 設立) ①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電力技術人 등은 電力技術의 研究·開發을 촉진하고 電力施設物의 質的向上과 電力技術人의 品位維持·業務改善·教育訓練·指導 및 관리를 위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電力技術人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한다.</p> <p>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p> <p>③ 協會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p> <p>④ 協會의 定款 기재사항, 운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p> <p>⑤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 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第19條(사업) ① 協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p>		<p>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4장 한국전력기술인협회</b></p> <p>제31조(협회의 운영)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원의 회비</li> <li>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li> <li>3. 기타 수입</li> </ol> <p>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등) ①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명칭</li> <li>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li> <li>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li> <li>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li> <li>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li> <li>7. 총회에 관한 사항</li> <li>8. 이사회·지부·위원회에 관</li> </ol>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1. 電力技術人の 經歷確認</p> <p>2. 電力技術人·設計士 및 監理員의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訓練</p> <p>3. 電力技術에 관한 調査·研究·開發·出版 및 弘報</p> <p>4. 電力施設物의 診斷·技術指導 및 事故調査 分析</p> <p>5. 附設技術研究院의 設置運營</p> <p>6. 電氣事業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安全管理擔當者의 選任·解任 申告業務</p> <p>7. 會員의 업무수행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의 보장 및 會員에 대한 資金의 融資등을 위한 共濟事業</p> <p>8. 기타 通商産業部長官이 委託하는 業務</p> <p>②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共濟規程을 정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共濟規程의 重要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第2項의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범위·내용·共濟金·共濟料등 共濟事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p> <p>第20條(會員) ①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는 協會의 會員이 된다.</p> <p>1.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者·監理業者와 그 業體에 소속된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p> <p>2. 電氣事業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安全管理擔當者로 選任된 者</p> <p>3. 電氣工事業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工事業의 免許를 받은 事業體에 소속된</p>		<p>한 사항</p> <p>9. 임원 및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p> <p>10.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p> <p>11.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p> <p>12. 기타 필요한 사항</p> <p>②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33조(지도·감독) ① 협회는 다음 사항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중요 의결사항</p> <p>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p> <p>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p> <p>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p> <p>5. 기타 협회와 회원에게 관계 되는 중요한 사항</p> <p>② 협회는 전력기술인·감리원·설계업자·감리업자·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電力技術人</p> <p>② 第1項의 規定에서 정한 者 외의 電力技術人도 申請에 의하여 會員이 될 수 있다.</p> <p>第21條(任員) ① 協會의 任員은 會長 1人, 副會長 2人을 포함한 10人 이상 20人 이내의 理事와 監事 2人으로 한다.</p> <p>② 會長 및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다만, 會長 및 常勤任員은 通商産業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會長·副會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각각 連任할 수 있다.</p> <p>第22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가 아니면 그 명칭에 “韓國電力技術人協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5章 補 則</p> <p>第23條(監督)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監督상 필요한 경우에 設計業者 및 監理業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所·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書類·施設등을 檢査하거나 關係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 및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第24條(秘密維持) 이 법에 의하여</p>	<p>제4장 보 칙</p>	<p>제5장 보 칙</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設計 또는 監理를 행하는 者는 業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電力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25條(聽聞) 通商産業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監理業의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相對方 또는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相對方 또는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26條(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訓練을 받고자 하는 者</li> <li>2.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士의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li> <li>3.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li> </ol>	<p>제28조(의견진술의 절차) ① 통상 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지정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제34조(수수료) ① 법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감안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② 법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監理員의 資格確認을 받고자 하는 者</p> <p>4.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p> <p>第27條(權限의 위임 委託) 通商産業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p>	<p>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의 수리</li> <li>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li> <li>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의 접수</li> <li>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li> <li>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li> <li>6.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관할법원에 의 통보</li> </ol> <p>②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에 관한 자료의 접수</li> <li>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서의 발급</li> <li>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 면허증의 발급</li> <li>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li> </ol>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第6章 罰 則</p> <p>第28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第12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監理를 發注한 者</li> <li>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員의 再施工, 工事中止命 命 命 기타  필요한 措置를 이행 하지 아니한 者</li> <li>3. 詐爲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登錄을 한 者</li> <li>4.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設計 또는 監理를 業으로 한 者</li> <li>5. 設計業者 또는 監理業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li> </ol>	<p>감리원수첩의 발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현황신고의 접수</li> <li>6.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확인서의 발급</li> </ol> <p>③ 시·도지사 및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처분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별 칙</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命令을 받고 그 營業停止 기간중에 營業을 한 者</p> <p>6.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상 알게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者</p> <p>第2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 또는 監理를  실시함에 있어 技術基準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p> <p>2. 第1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設計한 者</p> <p>3.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監理를  받지 아니한 者</p> <p>4. 第11條第5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設計用役을 發注한 者</p> <p>5.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한 者.  正當한  사유 없이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p> <p>第30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을  正當한  事由없이   기피한  者</p> <p>2.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經費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者</p> <p>3.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에  署名 捺印을  하지  아니한  者</p> <p>4.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義務를  위반한  者</p> <p>5.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의  申告</p>	<p>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p> <p>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의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p>	<p>제3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제기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를 하지 아니한 者</p> <p>6. 第22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韓國電力技術人協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이 賦課·徵收 한다.</p> <p>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 日 이내에 通商産業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通商産業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p> <p>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중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p> <p>第31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또는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p> <p>第32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協會의 任職員과 第12條 및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p>	<p>는 것으로 본다.</p> <p>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p> <p>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를 행하는 監理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p>		
<p>附 則</p>	<p>부 칙</p>	<p>부 칙</p>
<p>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하는 날부터 施行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第2條(韓國電力技術人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 大韓電氣技師協會(이하 이 條에서 “技師協會”라 한다)는 그 總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할 수 있도록 通商産業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p>	<p>제2조(전기공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4 비고 제6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계약된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技師協會는 이 법에 의한 協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清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技師協會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와 義務는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가 承繼한다.</p>	<p>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및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자로 등록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사무실 및 자본금과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p> <p>② 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자(전기분야 감리원을 보유한 자에 한한다)는 이 영에 의하여 감리업등록을 한 것으로</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電氣 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 한다.</p> <p>第26條第2項을 削除한다.</p> <p>② 電氣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45條第7項중 “大統領令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事實을 通商産業部長官 또는 市 ·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韓國 電力技術人協會에 申告하여야 하며”로 한다.</p> <p>第4條(設計 · 監理에 대한 經過措 置)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 에 의하여 電力施設物에 관한 設計 · 監理를 施行하고 있는 것 은 이 法에 의하여 設計 · 監理 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p>	<p>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 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 준에 적합한 기술인력 · 사무실 · 자본금 및 장비를 갖추어 등 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p> <p>제5조(감리원교육에 관한 경과조 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 리법에 의하여 감리원교육을 받 은 전력기술인은 이 영에 의한 감리원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 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를 삭제한다.</p> <p>②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중 “신고서에 상공 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선임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상 공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에게”를 “신고서를 전력기술관 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 국전력기술인협회에”로 한다.</p> <p>제21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를 “한국전력 기술인협회”로 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 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 호서식중 “통상산업부장관” 를 각 시 · 도지사 〃로 한다.</p> <p>②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4의 기술분야 10. 건축의 자격종목중 건축전기설비기술 사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기술 분야 4. 전기의 자격종목중 철 도신호기술사란 다음에 건축전 기설비기술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879 1309 1245 1476"> <tr> <td data-bbox="879 1309 971 1476">건 축 전 기 설 비 기 술 사</td> <td data-bbox="971 1309 1063 1476">필 기 시 험 및 면 접 시 험</td> <td data-bbox="1063 1309 1245 1476">전 축 전 기 설 비 의 계 획 과 설 계 · 감 리 및 의 장 기 타 전 축 전 기 설 비 에 관 한 사 항</td> </tr> </table>	건 축 전 기 설 비 기 술 사	필 기 시 험 및 면 접 시 험	전 축 전 기 설 비 의 계 획 과 설 계 · 감 리 및 의 장 기 타 전 축 전 기 설 비 에 관 한 사 항
건 축 전 기 설 비 기 술 사	필 기 시 험 및 면 접 시 험	전 축 전 기 설 비 의 계 획 과 설 계 · 감 리 및 의 장 기 타 전 축 전 기 설 비 에 관 한 사 항			

# [별표 1] 전력기술인의 범위(제3조관련)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

### 가. 기술계 전력기술인

구 분	기 술 사	기사 1급	기사 2급
종 류	발송배전 전기기기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축전기설비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 나. 기능계 전력기술인

구 분	기 능 장	다기능 기술자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또는 기능 사: ※표시)	기능사보
종 류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공사 ※승강기보수 ※철도신호	전기기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 2.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인정범위

### 가. 등급의 구분

학력·경력에 의한 전력기술인은 전공학과와 경력내용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구분 하되, 해당전공학과와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 나. 인정범위

구 분	국가기술자격기준	학력·경력기준
특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li> <li>○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 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이 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전력기 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전력기 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전력기 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이상 전력기 술업무를 수행한 자</li> </ul>
고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 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li> <li>○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전력기 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전력기 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전력기 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이상 전력기 술업무를 수행한 자</li> </ul>
중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 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전력기 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전력기 술업무를 수행한 자</li> </ul>

구 분	국가기술자격기준	학력·경력기준
중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ul>
초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li> <li>○ 기능사 1급이상(다기능기술자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ul>

**\* 비 고**

1. 위 표의 학력자는 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전력기술관련학과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는 전력관련 해당분야에서 계획·조사·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근무무를 한 자를 말한다.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호를 준용한다.

## [별표 2] 감리원의 자격(제21조제1항관련)

구 분	국가기술자격기준	학력·경력기준
특급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li> <li>○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ul>
고급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li> <li>○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li> </ul>

구 분	국가기술자격기준	학력·경력기준
고급감리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감리원	○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감리원	○ 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비 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안전관리분야의 전기안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기술분야의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3. 전력기술관련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감리원의 해당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별표 3]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공사종류	총 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전·송전·변전 ·배전·전기철도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10억원미만인 공사	초급감리원이상	
수전·구내배전· 가로등·전력사용 설비·기타	총공사비 20억원이상인 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1억원미만인 공사	초급감리원이상	

\* 비 고 :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여 공사감리하게 할 수 있다.

## [별표 4] 설계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27조제1항관련)

종 류	등 록 기 준			영 업 범 위
	기술인력	사 무 실	자 본 금	
총 합 설 계 업	발송배전기술사·전기기기기술사·전기응용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중 2명, 설계사 4명, 설계보조자 4명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억원이상(한국전 력기술인협회출자 증권200좌포함)	해당전문기술분야의 전력시설물의 설계 도서의 작성
전 문 설 계 업	1종 전기분야기술사 1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3천만원이상(한국 전력기술인협회출 자증권70좌포함)	해당전문기술분야의 전력시설물의 설계 도서의 작성
	2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천만원이상(한국 전력기술인협회출 자증권20좌포함)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의 작성

### \* 비 고

1. 종합설계업의 설계사는 1급설계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설계보조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전력기술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전기분야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자이어야 한다.
3.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4.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출자증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보며, 법적출자좌수를 초과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 예치된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가 설계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사무실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된다.
6.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2종전문설계사무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은 설계사 1인으로 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된다.
7.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계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별표 5]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27조제1항관련)

## 1. 기술인력·사무실·자본금·영업범위

종 류	기 술 인 력	사 무 실	자 본 금	영 업 범 위
총 합 감리업	특급감리원 2인이상, 고급감리원 2인이상, 중급감리원 2인이상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감리원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1억원이상(한국전력기술인협회 출자증권200좌 포함)	전력시설물
전 문 감리업	특급감리원 1인이상을 포함한 3인이상의 감리원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5천만원이상(한국전력기술인협회 출자증권100좌포함)	발·변전설비용량 10만킬로와트미만, 전압10만볼트미만의 송·배전선로 20킬로미터미만, 용량5천킬로와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연면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 2. 보유장비 기준

장 비 명	보유수량(단위 : 대수)		장 비 명	보유수량(단위 : 대수)	
	종합감리업	전문감리업		종합감리업	전문감리업
절연저항측정기(500볼트)	3	1	접지저항측정기	3	1
절연저항측정기(1,000볼트)	3	1	육코운메타	3	1
절연저항측정기(10,000볼트)	1	1	고압, 특고압 접전기	3	1
			저압 검전기	3	1
			마이크로메타	3	1
			멀티테스타	3	1
			버어니어캘리퍼스	3	1
			조도계	1	1

### \* 비 고

- 기술인력중 50%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제자격을 취득자이어야 한다.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출자증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보며, 법적출자 좌수를 초과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 예치된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가 감리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사무실·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된다.
- 설계업으로 등록한 자가 감리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사무실·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된다.
-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감리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별표 6] 과태료 처분기준(제30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제1항제1호	50만원
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법 제30조제1항제2호	50만원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제1항제3호	100만원
4.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30조제1항제4호	100만원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제1항제5호	100만원
6.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0조제1항제6호	100만원

## [별표 1] 경력산정기준(제9조관련)

### 1.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을 10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유지보수·관리·진단·점검·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
- 다.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중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업무 및 발전전기관련 병과를 받은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
- 라. 교육관련법·직업훈련기본법·기능대학법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기관련 교수·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 마. 전력기술관련 단체·업체 등에서 근무한 자의 전기기술에 관한 업무

### 2.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을 8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의 설계·제조·검사 등 기술업무
- 나.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중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검사·정비 등의 기술업무
- 다. 제량법에 의한 전기제량기술에 관한 업무
-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 마. 건설관련법에 의한 전기관련 기술업무
-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
- 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전자·통신기술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아. 전자·통신 관계법에 의한 전기·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 3. 자격·학력 취득전 경력기간을 50%를 적용하는 경력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경력

## [별표 2] 설계·감리업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9조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조 문	처 분 내 용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16조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16조제2호	등록취소
3. 설계 또는 감리업무수행중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때	법 제16조제3호	
가. 4주미만의 가료를 요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미만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3월
나. 사망이나 4주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6월
4. 법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경우 6월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16조제4호	등록취소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법 제16조제5호	업무정지 3월
6.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법 제16조제6호	
가. 1차		업무정지 6월
나. 2차		등록취소

## [별표 3]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수수료 기준(제34조제2항관련)

업 종	구 분	등 록	재 발 급	변 경
설 계 업	총 합	50,000원	30,000원	10,000원
	전문설계업(1종)	30,000원	20,000원	10,000원
	전문설계업(2종)	20,000원	15,000원	10,000원
감 리 업	총 합 감 리 업	50,000원	30,000원	10,000원
	전 문 감 리 업	30,000원	20,000원	10,000원